

2023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법 무 부 소 관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 목 차 】

I. 소관 기관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II. 심사경과	1
III. 예비비사용 개요	3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4
V. 대체토론 요지	11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1
VII. 심사결과	11
VIII. 소수의견 요지	12
IX. 시정요구사항	12
X. 부대의견	1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2024. 8.

법제사법위원회

I. 소관 기관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년 5월 31일
2. 회부일자 : 2024년 6월 11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법무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2차 위원회(2024. 8. 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3. 8. 26.) 상정 · 의결
- 제3차 위원회(2024. 8. 27.) 상정 · 소위원회심사보고 · 대체토
론 · 의결

Ⅲ. 예비비사용 개요

1. 법무부 소관

(1) 일반회계

- 예비비는 15억 2,5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그 전액이 배정되었으며, 배정액의 53.8%인 8억 2,100만원이 지출되고, 배정액의 42.4%인 6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음.
- 예비비의 구체적인 지출내용은 특별검사 운영경비에 8억 2,100만원이 지출되었음. 한편, 이월액은 특별검사 운영경비 6억 4,700만원이고, 불용액은 5,700만원임.

〈예비비 배정 및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지출결정액	배 정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2023년	1,525	1,525	821	647	57
2022년	4,265	4,265	3,149	640	476
증감	△2,740	△2,740	△2,328	6	△419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법무부 소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14) 안미영 특별검사

(가) 결산 개요

- 안미영 특별검사 사업(1339-308)은 2022년 4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5월 9일 공포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명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등 업무 지원을 위한 것임.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6억 4,000만원과 예비비 15억 2,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억 6,500만원 중 1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800만원을 불용하였음.

<안미영 특별검사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안미영 특별검사	-	640	-	1,525	2,165	1,460	647	58
· 안미영 특별검사	-	640	-	1,525	2,165	1,460	647	58

(나) 국가재정법상 이월 한도를 초과한 과도한 예비비 이월 시정 필요

- 법무부는 안미영 특별검사팀 운영을 위해 2023년에 총 15억 2,5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 받았는데, 1차로 6월에 8억 6,000만원을 배정 받았고 2차로 12월에 6억 6,500만원을 배정받았음. 법무부는 2차로 배정받은 예비비 6억 6,500만원 중 이월이 불가한 직책수행경비 약 1,8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인 6억 4,700만원을 2024년도로 이월시켰음.
- 법무부는 2022년에도 안미영 특검팀의 예비비를 2023년으로 이월한바 있고, 과거에도 박영수 특검, 허익범 특검팀 등에서 배정받은 예비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관행을 반복해왔음.

<특별검사 운영 관련 예비비 이월 사례>

(단위: 백만원)

연도	박영수 특검 (2016.12~2023.2)		허익범 특검 (2018.6~2021.7)		안미영 특검 (2022.5~)	
	예비비 배정액	이월액	예비비 배정액	이월액	예비비 배정액	이월액
2016	3,967	3,004	-	-	-	-
2017	2,502	317	-	-	-	-
2018	2,898	27	3,148	507	-	-
2019	2,740	156	1,466	46	-	-
2020	2,308	400	2,065	120	-	-
2021	1,391	199	2,040	-	-	-
2022	-	-	-	-	4,265	640

* 자료: 법무부

- 이러한 예비비 이월의 근거를 보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예산집행지침)은 예비비 집행시 이월을 최소화하되, 효율적인 예비비 집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이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5호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란 ‘기본경비’ 즉, 각 중앙관서에서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경비를 의미하며, 이월 한도는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5%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44

(3) 예비비 이월 최소화 원칙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예비비 소요는 효율적인 예비비 집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이월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8, 59

<2. 기본경비>

2-1. 적용범위

가. 「국가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의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여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경비임

2-2. 세부지침

나. 기본경비 이월

(1) 기본경비 이월범위

- 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목을 제외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경비의 이월범위에 사고이월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복리후생비
나. 직책수행경비

- 예비비는 ‘기본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산집행지침에서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이월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내용을 예비비 특징에 맞게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따라서 예비비 이월시 이월 한도는 ‘당해연도 배정된 예비비 총액의 15%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2023년 안미영 특별검사 세무사업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6억 4,700만원은 예비비 배정 총액(15억 2,500만원)의 42.4% 규모로 이월 한도를 초과하였음.

-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예비비 역시 법무부 세출예산에 합산되어 총괄관리되어야 하므로 예비비의 이월한도 기준(모수) 역시 “법무부 기본경비 총액”으로 보아야 하며, 2023년 법무부 기본경비 총액은 1,550억 2,200만원이었으므로 예비비 이월 규모는 이월한도 15%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예비비 이월에 대한 예산집행지침을 법무부와 같이 해석하

는 것은 특별검사 예산을 법무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별도의 예비비로 독립적으로 편성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한해 예비비 편성을 허용하는 「국가재정법」 제22조 등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예산 이월은 필요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예비비 이월 한도 기준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기본경비 총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이라고 판단됨.

특히, 법무부는 안미영 특별검사 예비비가 처음 배정된 2022년에는 예비비 이월 한도의 기준(모수)을 ‘배정 예비비 총액’으로 해석하여 2022년 배정받은 예비비 42억 6,500만원의 15%인 6억 3,900만원만을 이월하고, 나머지 미집행액 4억 7,600만원은 불용처리한바 있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2022년 최초 예비비 배정액 4,265,066천원의 15%인 639,759천원을 이월하고, 초과잔액은 불용처리하였다”고 법무부 스스로 설명하였음.

- 따라서 법무부가 2023년 배정 예비비 총액의 15%(2억 2,875만원)를 초과한 6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예산집행지침 취지에 반하

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향후 특별검사 운영 등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예비비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검사 예비비를 다음연도 집행을 목적으로 당해연도에 미리 배정받는 관행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이월은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본경비 이월과 달리 예비비 이월은 예산집행지침에만 근거가 있을 뿐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행적인 예비비 이월을 지양하고 특별검사 예산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2023년에 다음연도 이월을 목적으로 배정받은 예비비 6억 6,500만원 중 예산집행지침상 이월이 불가한 직책수행경비 1,800만원이 포함되어 해당 항목을 전액 불용처리한 것 역시 부적절한 부분으로, 향후 예산집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예비비 배정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V. 대체 토론 요지

1. 법무부 소관

해당사항 없음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장경태위원)

1. 법무부 소관

해당사항 없음

VII. 심사결과

1. 법무부 소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

Ⅷ. 소수의견 요지

1. 법무부 소관

해당사항 없음

Ⅸ. 시정 요구사항

1. 법무부 소관

해당사항 없음

X. 부대의견

1. 법무부 소관

해당사항 없음